

# 대구예술대학교 학생증발급규정

(개정 2010.08.02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재학생의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발급 및 재발급)** ① 학생증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발급한다.

② 재학 중 학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 되어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한다.

**제3조 (발급명의)** 학생증은 대학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.

**제4조 (규격)** 학생증의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.

**제5조 (무효 및 반납)** ① 학생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.

1. 자퇴·제적 및 졸업인 경우
2. 기재(인쇄)사항을 임의 변경한 경우
3. 식별이 곤란한 정도로 오손 되었을 경우
4. 당해 학기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
5. 휴학을 한 경우

② 전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무효화된 학생증은 이를 학생처로 반납한다.

**제6조 (사용 기간)** 학생증은 입학과 동시에 발급하여 이를 졸업 시까지 사용하게 한다.

**제7조 (재발급 신청 절차)** 학생증을 발급 및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서식에 의한 학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대장 비치)** 학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학생증 발급 대장을 비치한다.

**제9조 (기타)**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행 세칙을 둔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3월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